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3
------	------

2017. 4. 1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4월 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4. 1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일반직 및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연구직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521명에서 17,603명으로 82명 증원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성동소방서와 서울식물원, 박물관 등의 신설과 서울시립대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교원 증원 등을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17,521명에서 17,603명으로 82명 순증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인 변동사항은 시민 안전 및 소방서 개서에 따른 소방직 56명, 서울식물원 개관에 따른 사업소 인력 15명,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직 4명, 시립대학교 교원 7명 등을 증원하려는 것임.

〈총 정원 17,521명 → 17,603명〉

구 분	총 계	2.3급	3급	4급	5급 이하	연구관	연구사	소방정	소방령 이하	교원
현행	17,521	22	18	226	9,837	53	285	28	6,831	491
개정후	17,603	23	17	227	9,851	54	288	29	6,886	498
증감	+82	+1	-1	+1	+14	+1	+3	+1	+55	+7

※ 2.3급(+1) : 교통기획관(임시→정규기구), 3급(-1) : 교육정원 감축

구 분	총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합의제 행정기관
개정 전	17,521	9,715	300	6,865	491	150
개정 후	17,603	9,734	300	6,921	498	150
증 감	82	+19	-	+56	+7	-
사 유		서울식물원 (+15) 공예박물관 (+2), 평창동 미술 문화 복합 시설(+2)		-성동소방서 신설(+56)	-시립대 교원 (+7명)	

나. 소방공무원 증원(안 제2조)

- 2017년 7월 성동소방서 신설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 등 시민안전에 필요한 필수조직 구성과 기능유지를 위해 소방공무원 56명을 순증하고자 함.

〈성동소방서 기구 및 인력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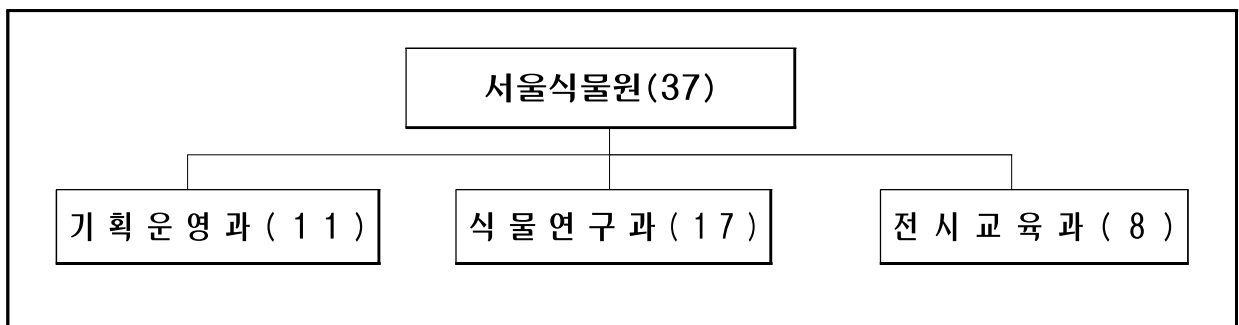
【현 재】	【신 설】	【변경 후】
광진소방서	성동소방서	광진소방서
3과1단(69)	소 방 행 정 과 재 난 관 리 과 예 방 과 현 장 대 응 단	3과1단(60)
구의119안전센터(75) 구조대(21)	행 정 팀(6) 대 응 총 괄 팀(5) 예 방 팀(5) 지 휘 1 팀(8)	구의119안전센터(66) 구조대(21)
능동119안전센터(28)	장 비 회 계 팀(5) 구 조 팀(2) 검 사 지 도 팀(6) 지 휘 2 팀(6)	능동119안전센터(28)
송정119안전센터(31)	홍 보 교 육 팀(3) 구 급 팀(2) 위 험 물 안 전 팀(3) 지 휘 3 팀(6)	중곡119안전센터(28)
성수119안전센터(31)	성수안전센터(28) 행당안전센터(28) 금호안전센터(28)	
행당119안전센터(40)	※이관(광진→성동) ※이관(광진→성동) ※이관(광진→성동)	
금호119안전센터(28)	현장대응단(81) 구조대(21) ※신설 직할안전센터(60) ※신설	
중곡119안전센터(28)		
총 351명	총 223명 (광진서 이관 148, 자체조정 19, 순증 56)	총 203명(△148)

- 신설되는 성동소방서는 3과 1단 3센터에 모두 223명의 인력으로 설치될 예정이지만 기존 광진소방서에서 성동구 관내 업무를 담당하던 기구와 정원을 축소해 이를 성동소방서로 이관하는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 증원 수요를 효율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였음.
- 아울러,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라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안 별표2와 같이 변경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소방서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증원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되며, 특히 기존 기구와 인력의 재조정을 통해 증원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 것도 조직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임.
- 현재 서울시(이하 “시”)에는 23개 자치구에 23개 소방서와 116개 119안전센터가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성동소방서(2017.7)와 금천소방서(2019.12)가 예정대로 신설될 경우 자치구별로 소방서비스 불균형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참고자료 1).
- 시는 그 동안 소방공무원 3교대와 구급요원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최근 5년간 696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하였으며, 향후에도 기준인 건비와 인력운용상황 등을 고려해 소방공무원 증원 계획 등을 조정할 예정임.

다. 사업소 필요인력의 증원(안 제2조 및 별표 3)

- 안 제2조와 별표 3은 2017년 10월 부분개장하는 서울식물원과 2018년과 2019년 순차적으로 개관 예정인 공예박물관 및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 우선, 시는 현재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 서울식물원 조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공원과 식물원 일부를 부분개장할 예정임.
- 시는 완전개장이 예상되는 2018년 6월 이후 장기적으로 서울식물원의 시설관리와 식물관리, 전시교육을 위해 3개 부서에 모두 37명의 인력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우선 개장 및 운영계획 수립 등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2과 15명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임.

〈서울식물원 기구 및 정원 배치계획〉



- 이 밖에 시는 2021년까지 박물관 6곳, 미술관 4곳을 포함해 모두 15개 문화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18

년과 2019년 각각 개관예정인 공예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시설 개관준비에 필요한 전문인력(연구직)을 각 2명씩 우선 배치해 유물구입이나 전시콘텐츠 기획 등 박물관 조성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에 따르면 시는 도심권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 관리와 문화인프라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이후 5년동안 모두 60명의 관련 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시민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의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필요 인력들의 적절한 채용시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라. 시립대학교 교원 증원(안 제2조 및 별표 3)

- 시는 시립대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전임교원확보를 향상을 위해 모두 7명의 교원을 증원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학생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교원(2명), 박사과정 신설에 필요한 기준 충족을 위한 중국어문화학과(1명), 빅데이터 분석과 도시개발 관련 융복합 분야(1명)과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대비한 교원 확보 등임(3명).

-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대학은 아래와 같이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해야 함.

〈교육부 교원 정원산정 기준〉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1인당 학생수	25	20	20	20	8

-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시립대학교의 교원 기준정원은 498명으로 현재 정원 428명 보다 70명의 교원이 더 확보되어야 하며, 주요 국립대학이나 경쟁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¹⁾.

〈주요 국립 및 사립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비교〉

설립구분	학교명	학 생 편 제 정 원 (A)	교 육 부 법 정 정 원 (B)	교원현원 (C)	교원1인당 학생수 (A/C)	교원확보율 (C/B×100)
공 립	서울시립대	10,961	498	428	26.1	85.9%
사 립	건국대학교	18,983	918	712	26.7	77.6%
국 립	경북대학교	30,113	1,562	1,262	23.9	80.8%
국 립	경상대학교	17,536	892	807	21.7	90.5%
사 립	경희대학교	30,490	1,589	1,419	21.5	89.3%
사 립	고려대학교	29,972	1,425	1,446	20.7	101.5%
사 립	동국대학교	16,773	758	672	25.0	88.7%

1) 서울시립대학교의 2016년대 편제정원 학생 수는 10,961명임.

국립	부산대학교	31,080	1,674	1,350	23.0	80.7%
사립	서강대학교	13,029	565	434	30.0	76.8%
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	31,102	1,705	2,248	13.8	131.9%
사립	성균관대학교	25,367	1,198	1,426	17.8	119.0%
사립	연세대학교	30,453	1,514	1,648	18.5	108.9%
국립	전남대학교	22,883	1,231	1,103	20.8	89.6%
사립	중앙대학교	21,478	1,009	881	24.4	87.3%
사립	한국외국어대학교	18,509	765	687	27.0	89.8%
사립	한양대학교	22,569	1,093	1,012	22.3	92.6%
사립	홍익대학교	15,347	720	526	29.2	73.1%

※ 출처 : 2016년 대학정보공시, 서울시립대는 ' 17. 2. 1 기준으로 산출

-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전임교원 강의비율도 2016년 기준으로 국공립대 평균이 65.4%인데 반해 사립대학교는 54.6%에 그치고 있음²⁾).
- 전임교원 확보비율은 대학교육의 질은 물론이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CK(대학특성화)사업이나 BK(두뇌한국)사업,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과 같은 대학의 대내외 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한편, 사립대학교는 현재 428명의 정원을 확보하고도 422명의 전임

2) 2016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참조

교원을 채용하고 있어 6명의 과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확보된 교원 정원에 따라 필요한 교원의 신속한 채용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마. 인건비의 증감

- 시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1조 6,025억원을 2017년도 기준인건비로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당초 1조 5,887억원을 시의 인건비 총액으로 편성하였음.
- 본 개정안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82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약 67억원의 추가적인 인건비가 소요됨에 따라 시의 2017년도 인건비 여유금액은 약 71억원임.

〈정원조정에 따른 비용추계〉

(단위 : 천원)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비 고
+6,688,892	○ 소방공무원(+56) : +4,451,431	'17년 기준인건비 산정단가 기준
	○ 일반직(+15) : +1,216,166	
	○ 교육공무원(+7) : +692,741	
	○ 연구직(+4) : +328,554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준인건비 (행자부 산정)	서울시 인건비 편성 (당초편성)	증원 비용추계 ('17.7.1字)	여유금액 (차액)
1,602,520	1,588,703	6,688	7,129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521”을 “17,603”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9,715”를 “9,734”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6,865”를 “6,921”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491”을 “498”로 한다.

별표 2 소방직공무원의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1%이내	2.2%이내	6.3%이내	7%이내	15%이내	33%이내	35.5%이상
----	------	--------	--------	------	-------	-------	---------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7,521”을 “17,603”으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9,772”를 “9,787”로 한다.

같은 표 2·3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급	23	18		1	3	1
------	----	----	--	---	---	---

같은 표 3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17	7		1	9	
----	----	---	--	---	---	--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27	136	16	7	64	4
----	-----	-----	----	---	----	---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387”을 “9,401”로 한다.

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338”을 “342”로 한다.

같은 표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54	2		32	20	
-----	----	---	--	----	----	--

같은 표 연구사의 계란 중 “285”를 “288”로 한다.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의 계란 중 “6,865”를 “6,921”로 한다.

같은 표 소방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정	29	2		27		
-----	----	---	--	----	--	--

같은 표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6,831”을 “6,886”으로 한다.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의 계란 중 “491”을 “498”로 한다.

같은 표 교수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수 등	435			435		
------	-----	--	--	-----	--	--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52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9,715명</p> <p>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6,865명</p> <p>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91명</p> <p>4. (생략)</p> <p>5. (생략)</p>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2. (생략)</p> <p>3. 소방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소방정 이상</th> <th>소방령</th> <th>소방경</th> <th>소방위</th> <th>소방장</th> <th>소방교</th> <th>소방사</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1% 이내</td> <td>2% 이내</td> <td>6% 이내</td> <td>7% 이내</td> <td>15% 이내</td> <td>33% 이내</td> <td>36% 이상</td> </tr> </tbody> </table>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7,52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2% 이내	6% 이내	7% 이내	15% 이내	33% 이내	36% 이상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7,521						정무직계	2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17,603 -----</p> <p>-----</p> <p>1. -----</p> <p>-----</p> <p>9,734 --</p> <p>2. -----</p> <p>----- 6,921 --</p> <p>3. -----</p> <p>----- 498 --</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2. (현행과 같음)</p> <p>3. 소방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소방정 이상</th> <th>소방령</th> <th>소방경</th> <th>소방위</th> <th>소방장</th> <th>소방교</th> <th>소방사</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1% 이내</td> <td>2.2% 이내</td> <td>6.3% 이내</td> <td>7% 이내</td> <td>15% 이내</td> <td>33% 이내</td> <td>35.5% 이상</td> </tr> </tbody> </table>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7,60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2.2% 이내	6.3% 이내	7% 이내	15% 이내	33% 이내	35.5% 이상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7,603						정무직계	2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2% 이내	6% 이내	7% 이내	15% 이내	33% 이내	36% 이상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7,521																																																																										
정무직계	2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2.2% 이내	6.3% 이내	7% 이내	15% 이내	33% 이내	35.5% 이상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7,603																																																																										
정무직계	2																																																																										

현행							개정안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일반직 계	9,772							일반직 계	9,787						
1급	7	6	1				1급	7	6	1					
2·3급	22	17		1	3	1	2·3급	23	18		1	3	1		
3급	18	8		1	9		3급	17	7		1	9			
3·4급	5	5					3·4급	5	5						
4급	226	136	16	7	63	4	4급	227	136	16	7	64	4		
4·5급	10	10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9,387							5급이하 소계	9,401						
전문경력관 소계	97							전문경력관 소계	97						
별정직 계	29							별정직 계	29						
연구직 계	338							연구직 계	342						
연구관	53	1		32	20		연구관	54	2		32	20			
연구사	285							연구사	288						
지도직 계	24							지도직 계	24						
소방공무원 계	6,865							소방공무원 계	6,921						
소방준감	5	4		1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8	2		26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6,831							소방령 이하 계	6,886						
교육공무원 계	491							교육공무원 계	498						
총장	1			1			총장	1			1				
교수 등	428			428			교수 등	435			435				
조교	62							조교	62						